

교직원복지규정

4-3-18

규정번호 4-3-18
제정일자 2024.7.24
최근개정 2025.12.1
개정차수 1차
관리부서 총무회계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복지”라 함은 구성원이 우리대학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, 맡은 업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적, 환경적,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구성원 중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전임교원
2. 연구년, 교환교수 등으로 인해 해외에 파견 중인 전임교원
3. 직원(개정 2025.12.1.)
4. 휴직 중인 전임교원 및 직원(개정 2025.12.1.)

②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정년 전임교원(강의전담, 산학협력중점 교원 등) 및 조교 등을 포함한다.(개정 2025.12.1.)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교직원의 복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사무처장, 교무처장, 기획실장, 교수 및 직원 대표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본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처에서 주관하며,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교직원의 복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복지의 운영에 관한 주요시책 및 운영방법 결정
2. 복지의 시행과 폐지에 관한 심의
3. 교직원 복지 규정의 제·개정 사항 심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표결에 있어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복지의 범위)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복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3-18 교직원복지규정

1. 경조사 : 경조금 및 화환 지원 등
2. 건강혜택 : 종합건강검진 지원, 체육시설 이용 및 할인 등
3. 교육혜택 : 교육비 지원, 자기개발 지원 등
4. 여가 및 문화지원 : 휴양시설 사용, 교직원 동아리지원, 교통시설 지원, 문화활동 지원 등
5. 교내시설이용 : 교내 부대시설 이용 등
6. 장기근속 장려 : 근속연수에 따라 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(신설 2025.12.1.)
7. 기타 : 그 외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(개정 2025.12.1.)

제7조(복지의 시행) ① 제6조에서 적용되는 복지의 시행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하며, 업무의 정도, 근속기간, 대학발전기여도 등 기준을 근거로 적용대상, 범위 등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.(개정 2025.12.1.)

제8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복지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제3호·제4호, 제3조제2항, 제6조제6호·제7호, 제7조제2항)